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4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가합539546 보증채무금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람
담당변호사 양석표, 유현송
피 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이상근, 신승기, 강호정, 임방조, 최달용, 진재인, 김법
윤, 김범준, 권유진, 신산하
변 론 종 결 2022. 12. 23.
판 결 선 고 2023. 1.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9,131,185,071원 및 그중 18,793,316,492원에 대하여 2021.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대출 및 피고의 연대보증

1) 원고는 2007. 11. 29. D과 E이 대표이사로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여신기간 만료일 2017. 11. 29., 이자율 '변동금리(3개월물 Libor¹⁾ + 2.0%')로 하는 외화대출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C에 미화 2,424만 달러를 대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2) 원고는 2007. 11. 29. D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미화 31,512,000달러를 한도로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한정근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자필로 기재된 부분은 필기체로 표시하였다). 한편,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 중 '연대보증인'란에는 피고의 명판도장(회사명, 대표이사 성명, 소재지의 기재와 피고의 도장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이, '채무자'란에는 C의 명판도장(회사명, 대표이사 성명,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는 형태)이 각각 날인되어 있다.

■ 은행은 보증인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약정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1) 'London inter-bank offered rates'의 약자로, 영국 런던에서 우량은행끼리 단기자금을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를 말한다.

- 연대보증은 재산상 손실을 가질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미리 뒀면 “연대보증인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과 계약서의 내용을 잘 읽은 후 신중한 판단을 하시고,
- 붉은 선 으로 표시된 란(당사자란, 제1조 및 계약서 끝부분)은 보증인이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연대보증인 : 피고

연대보증인(이하 ‘보증인’이라 합니다)은 채무자가 A(이하 ‘은행’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제1조에서 정하는 범위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지며,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채무자가 따로 은행에 제출한 다음의 피보증채무에 관한 거래약정서의 각 조항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아래 각 조항을 확인합니다.

제1조(보증채무의 내용)

① 보증인은 아래의 내용에 따라서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1. 채무자 : C

2. 피보증채무의 범위

은행은 피보증채무의 범위를 달리하는 다음의 세 유형 가운데 어느 하나를 보증인이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보증인은 그 가운데 한정근보증 에서 정한 채무(이자, 지연배상금, 기타 부대채무를 포함합니다)를 보증하기로 합니다.

○ 한정근보증

채무자가 은행(본·지점)에 대하여 다음 종류의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거래, 거래, 거래, 거래

3. 근보증 한도액 미한 삼천일백오십만원이천불

4. 근보증 결산기

은행은 근보증 결산기를 정하는 다음의 세 유형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설정자가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보증인은 그 가운데 장래지정형 에서 정한 날을 결산기로 하기로 합니다.

○ **장래지정형** 정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보증약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보증인은 서면통지에 의하여 근보증 결산기를 지정할 수 있기로 하되, 그 결산기는 통지 도달일로부터 14일 이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통지 도달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합니다.

제5조(특약사항)

후채담보 후에도 보증계약은 변함없이 계속 유효하다.

3) 피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에 관하여 피고의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는 내용의 2007. 11. 26. 자 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고 한다) 의사록을 제출하였다.

이사회 의사록

1. 일시 : 2007. 11. 26. 오전 10시
2. 장소 : 서울시 종로구 F에 있는 C 회의실
3. 출석이사 : 3명 중 3명
4. 안건 : C 시설자금대출 연대입보의 건

- 내 용 -

- 차입은행 : A, G은행, H카드, I
- 차입주체 : C
- 차입종별 : 시설자금대출
- 차입금액 : 미합중국법화 육천육십만불정(US\$60,600,00.00)
 - A : US\$24,240,000.00
 - G은행 : US\$18,180,000.00
 - H카드 : US\$15,150,000.00
 - I : US\$3,030,000.00
- 연대입보한도 : 상기 차입금액의 130%
- 연대입보기간 : 본 채무 상환일까지

대표이사 D은 정관규정에 따라 본 이사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고하고 개최를 선언한다.
이어 위 의안을 상정하고 심의를 하고 전원 만장일치로 위 의안을 결의하고 폐회를 선언한다.

이사 : D (날인)

이사 : J (날인)

나. C의 회생절차 및 일부 변제

1) C은 2010. 1. 5. L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된 이후(이하 편의상 흡수합병 전후에 관계없이 'C'이라고 한다), 2015. 2. 11.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15. 3. 6. 대표이사 D을 법률상 관리인으로 보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서울회생법원 2015회합 100036), 위 회생절차에서 2015. 12. 15.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후 2016. 9. 29.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았다.

2) C은 이 사건 대출금채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2015. 5. 2. 골프회원권 매각대금으로 미화 716,033달러, 2016. 10. 17. 담보물인 선박 매각대금으로 미화 1,836,531.72달러를 각 변제하였고, 위 회생절차에서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2016. 12. 27. 1차 연도 변제분 148,714,122원, 2017. 12. 26. 2차 연도 변제분 123,928,436원을 각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C은 2015. 2. 11.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함으로써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21. 9. 13. 기준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합계 29,131,185,071원(= 원금 18,793,316,492원 + 연체이자 10,337,868,579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29,131,185,071원 및 그중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무효이다.

1)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는 굵은 선으로 표시된 란의 경우 자필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당사자 및 한정근보증의 대상이 되는 채무가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정근보증 대상 채무가 전혀 특정되지도 않았다(이하 '제1 주장'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므로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8조에 따라 이사회 승인이 있어야 유효하다. 그러나 피고는 형식적으로 이 사건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였을 뿐 실제 이사회를 개최하여 결의한 사실이 없고, 설령 이사회가 개최되어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위 결의만으로는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적법한 이사회 승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이하 '제2 주장'이라고 한다).

3) 나아가 피고의 대표이사인 D은 피고의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제3자인 C의 채무 변제를 위해 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대표권 남용에 해당한다(이하 '제3 주장'이라고 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보증한도(미화 31,512,000달러) 내에서 잔존 대출원리금 및 그중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무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는 서두에서 굵은 선으로 표시된 란은 보증인이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부분 중 '연대보증인'란과 '채무자'란에는 각각 피고와 C의 명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피보증채무의 범위에 관한 '한정근보증'란에는 채무자가 어떠한 종류의 거래로 부담하는 채무인지 그 거래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공란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과 앞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제1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에 명시한 바와 같이 보증인의 자필을 요구하는 취지는 보증인의 보증의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비록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과 '채무자'란에 자필로 기재되지는 않았지만, 보증인인 피고의 대표이사인 동시에 채무자인 C의 대표이사인 D이 직접 피고와 C의 각 유효한 명판도장을 날인한 점, 명판도장은 실무상 회사의 명칭과 주소, 대표이사 성명 등을 한꺼번에 편리하게 기재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장으로서 자필 기재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는 점, D은 '연대보증인'란의 경우 명판도장이 날인된 부분 중 대표이사 성명 부분에 자신의 이름을 자필로 부가 기재하기도 한 점, 피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건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이사회 의사록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보증의사가 분명하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나) 또한, 비록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상 피보증채무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기재

되어 있지 않지만,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이 사건 대출약정과 같은 날 체결된 점, 피고의 대표이사인 D은 채무자인 C의 대표이사이기도 하여 피보증채무의 범위를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체결 당시 제출한 이사회 의사록에도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금액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따라 피고가 부담할 피보증채무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2)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이사회 승인 여부

(1) 관련 법리

(가) 구 상법 제398조는 "이사는 이사회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이사와 회사의 거래에는 이사가 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대리인이나 대표자로서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와 이사 사이에 이해충돌의 염려 내지 회사에 불이익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 거래도 해당된다. 따라서 별개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 자가 어느 일방 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나머지 회사를 대표하여 연대보증을 한 경우에도 구 상법 제39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다카1591 판결 등 참조).

(나) 구 상법 제398조가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에 이사회 승인을 요하는 이유는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익상반거래가 비밀리에 행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그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이사회에 의한 적정한 직무감독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그 거래와 관련된 이사는 이사회 승인을 받기에 앞서 이사회

에 그 거래에 관한 자기의 이해관계 및 그 거래에 관한 중요한 사실들을 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만일 이러한 사항들이 이사회에 개시되지 않은 채 그 거래가 이익상 반거래로서 공정한 것인지 여부가 심의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통상의 거래로서 이를 허용하는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 등에는 이를 가리켜 구 상법 제 398조에서 규정하는 이사회 승인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4284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C의 대표이사와 피고의 대표이사를 겸하던 D이 피고를 대표하여 C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와 그 대표이사인 D 사이의 이해가 상반되고 피고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거래에 해당하며, 달리 원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 위와 같은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별다른 주장·증명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구 상법 제398조에 따라 이사회 승인을 요하는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체결 3일 전인 2007. 11. 26. 이 사건 이사회에서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 미화 2,424만 달러를 그 상환일까지 대출금액의 130%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는 안건'에 관하여 이사들의 전원 찬성으로 의결이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그에 앞서 이사회 구성원들에게 '피고의 대표이사인 D이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제공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관하여 단순히 통상의 거래로서 이를 허용하는 이사회 결의가 있었던 것을 넘어 이익상반거래로

서 공정한 것인지 여부가 심의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적법한 이사회 승인을 받은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의 효력 여하

(1) 관련 법리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은 이륜바 자기거래행위는 회사와 이사 간에서는 무효이지만, 회사가 위 거래가 이사회 승인을 얻지 못하여 무효라는 것을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안전과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할 필요상 이사회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는 것 외에 제3자가 이사회 승인을 알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비록 제3자가 선의였더라도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악의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제3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 거래가 회사와 회사 간의 거래로서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과 이사회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는데도 만연히 이사회 승인을 얻었다고 믿음으로써 거래통념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로 주의를 게을리하여 공평의 관점에서 제3자를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때 거래 상대방이 이사회 승인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가 증명하여야 할 사항에 속하므로, 제3자가 회사 대표이사와 거래 행위를 하면서 이사회 승인을 얻었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 상대방으로서는 회사의 대표자가 거래에 필요한 회사의 내부절차는 마쳤을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 경험칙에 부합하고, 이사회 승인을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

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73530 판결(위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변경되지 않은 부분) 등 참조].

(2)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와 을나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관하여 피고의 적법한 이사회 승인이 없음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제2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적법한 대표이사인 D이 피고를 대표하여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의 도장을 날인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 상대방인 원고로서는 D이 거래에 필요한 피고의 내부절차를 마쳤을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 경험칙에 부합한다.

(나) 피고가 강조하는 것처럼 대출 등 여신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여신거래 과정에서 더욱 신중하고 치밀한 대처가 요구되고, 그러한 취지에서 금융감독원은 '은행 검사업무 안내서'를 마련하여 은행으로 하여금 채무관계인이 법인인 경우 이사회 의사록을 통해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그에 따라 원고는 실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을 징구하였는데, 그 의사록에는 피보증채무의 내용(금액, 채권자 및 채무자), 연대보증 한도 및 기간 등과 함께 이사 전원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이사들의 날인도 존재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는 은행에게 요구되는 주

의의무를 충분히 다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 나아가 이 사건 이사회 의사록상 이 사건 이사회가 피보증채무인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관한 C의 이사회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거나, C 이사회의 의사록과 거의 동일한 형식·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관한 피고 이사회 결의의 존재나 효력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제3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나,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6678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와 갑 제8, 9호증, 을나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D이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통해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행위는 대표권을 남용한 것으로, 원고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피고에 대하여 무효이다.

(1) 피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따라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데, 그 대가로 C으로부터 어떠한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이 사건 대출금이 피고를 위해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가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발생할 구상금채권과 관련하여 담보를 제공받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위와 같은 보증행위로 인해 당연히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는 반면, C의 입장에서는 인적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원고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는 이익을 얻게 되었다. 즉, D이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또 다른 회사인 C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 피고의 영업이나 이익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와 C은 서로 맞보증을 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 C에 일방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C이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전인 2006. 6. 27. 원고와 사이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 10억 원을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포괄근보증 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있지만,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는 보증한도(약 310억 원)에 비해 현저히 적은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의 체결이 대표권 남용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뒤집기는 어렵다.

(3) 나아가 원고는 위와 같이 2006년에 피고에 대하여 대출을 실행한 이후 피고로부터 주기적으로 결산보고서, 재무제표 등을 제출받음으로써 피고의 영업 또는 재산상황, 경영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데[2006. 6. 27.자 여신거래약정(갑 제8호증) 제14조, 제15조 참조], 2006년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피고의 매출액은 약 218억 원, 영업이익은 약 36억 원이었다. 그런데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따른 피보증채무액은 미화 2,424만 달러(약 240억 원), 보증한도액은 미화 31,512,000 달러(약 310억 원)로, 피고의 연간 영업이익의 무려 8~9배에 달하는 금액이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연간 매출액보다도 많은 금액이었다. 그렇다면 금융기관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의 내용이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과도한 보증채무만을 지우고 아무런 이익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점과 C의 대표이사인 동시에 피고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는 D이 그 대표권을 남용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 무효라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현석

판사 오주훈

판사 성창희